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1352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신동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희응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사업장에 관하여 2023. 10. 19. 체결된 영업양수도 계약을 23,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주문과 같다.

예비적: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사업장에 관하여 2023. 10. 19. 체결된 영업양수도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사업장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라.

이 유

1. 피보전채권

-원고와 채무자 C 사이의 조정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발생(갑1, 갑6)

원고는 2022. 5. 2. C와 C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2022. 6.부터 2024. 1.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5일에 지급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C는 원고에게 사건본인(D, E, F)의 양육비로 2022. 6.부터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5일에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드단80418).-C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3. 5.부터 2024. 9.까지의 양육비 합계 25,500,000원에서 지급한 2,200,000원을 공제한 23,3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사해행위(갑5, 갑7, 을1의1 내지 을3의1, 2,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및 G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C가 2023. 10. 19. H에 대한 사업자를 폐업하고 피고가 2023. 10. 20. 같은 장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C에게 H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신탁하였지만 임대차계약은 피고 명의로 하고 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지급은 피고가 한 것이므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영업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4 내지 을6, 을10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C는 2015. 1. 16.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도 연천군 I에서 방앗간 영업을 하였다. C는 2023. 10. 19. 위 방앗간에 대한 사업자폐업을 하였고, C의 모인 피고는 2023. 10. 20.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C가 조정조서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2023. 6. 15. 위 방앗간을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지급 받지 못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한 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지급받고(양육비로 지급하여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023. 7. 4. 집행취소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C가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2023. 10. 10. 위 방앗간을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청구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로 한 동산압류신청을 하여 2023. 10. 25. 진행된 유체동산압류집행은 사업자가 상이하다는 사유로 집행불능되었다.

-원고는 원고의 시누이와 양육비 지급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압류신청을 할 것이라고 연락하였고, 원고는 2023. 10. 10. 피고에게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C가 2023. 10. 19. 위 방앗간에 대한 폐업신고를 할 무렵이나 현재까지 무자력이다(C 명의로 된 적극재산은 당진시 J 임야 343㎡ 중 343분의 89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거래가액이 1,395만에 불과한 반면에 K은행 등에 대한 채무는 위 적극재산액을 훨씬 초과한다).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상회복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C는 연락이 되지 않아 위 방앗간의 영업을 양수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피고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의하면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사업장에 관하여 2023. 10. 19. 체결된 영업양수도 계약을 23,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오성우

별지